

농촌지역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 Field Survey on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Community Living Home for the Elders Living Alone in the Rural Village

박 중 신* 박 현 춘** 김 승 근***

Park, Chung-Shin Park, Heon-Choon Kim, Seung-K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ommunity living home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living home in Korea is distributed over the Jeonnam-do areas by approximately 67.7%, and distributed over 18 cities in the Jeonbuk-do areas. Second, In a type of community living home, 「Sharing residence type」 accounts for approximately 97%. The reason of this is because it can save a budget by utilizing existing public accommodation. Third, the administration main constituent of community living home running in each city is a neighborhood association, but bears the administration expense in the local government. Fourth, as a result of having analyzed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community living home, 「Sharing residence type」 knew that a per person necessary area was the insufficient. Finally, it is desirable for oneself of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to be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main constituent of the community living home basically.

키워드 : 농촌마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실태, 거주유형

Keywords : Rural Village, Elders Living Alone, Community Living Home, Operational Realities, Residential Type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농촌지역에는 도시로의 산업 및 경제구조 집중화 현상에 의해 젊은 층의 인구유출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지역에는 고령의 독거가구와 노후화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 겨울철 난방미흡, 영양 불균형, 위생상태 불량 등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점차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독거노인 중 한 해 최소 500~1,000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독사의 연령층도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파악된다. 또한, 겨울철 난방미흡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농촌지역의 난방시설 중 기름보일러 사용비율이 49.1%이며, 겨울철 난방비는 월 평균 약 60만원

이 소요되고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 3인 최저생활비(1,260,316원)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최소 50%를 겨울철 난방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현재 농촌지역의 주거 및 복지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고령자 농가,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기반이 미약한 취약계층¹⁾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에 대한 물리적 거주환경의 개선일 것이다.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노후화된 재래식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겨울철 난방미흡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고, 고독감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은 우울증으로 이어지며,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마을 내의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으로서 최근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지역에 독거노인이 모여 함께 거주하는 “공동생활홈”을 조성하면서, 독거노인의 공동체적 거주공간 및

* 정희원, (주)마을제작소 대표이사/공학박사(주거자)

** 정희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전문관/건축학박사

*** 정희원,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교신저자: kimlaud@naver.com)

이 논문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지역개발과)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1) 취약계층(또는 소외계층)은 소득기반이 미약한 고령자 농가,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결손가정 등을 일컫으며, 이 중에서 고령자 독거노인은 대부분이 고령자 농가,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내에서도 가장 점유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Elders Community Living Facilities

구분	시설(Facility)	주거(Home 또는 House)
개념	고령자에 대한 공공, 의료, 케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시설 개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 공간적 주거개념
종류	공동생활시설(Community Living Facilities) 그룹홈(Group Home) 노인홈(Senior's Home)/실버타운(Silver Town)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 경로홈(Home for the Elderly)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Senior's Apartment House) 노인공동생활주택(Senior's Community Living House) 공동생활홈(Community Living Home)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동생활홈은 독거노인 가구의 거주공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숙식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을 내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바람직한 조성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시행 또는 건축되고 있는 관련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조사를 행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의 조성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거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조성·운영 중인 공동생활홈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식품부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취합한 자료인 『고령자 지원 시설 현황(2014년 1월)』²⁾을 토대로 지역별 시설현황, 거주유형별, 운영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고찰하였다. 최종적으로, 거주유형별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2. 공동생활홈의 개념과 기존 연구동향

2.1 공동생활홈의 개념 및 유형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매우 다종·다양하다. 직접적으로는 공동생활주거³⁾, 그룹홈⁴⁾, 노인홈⁵⁾, 경로홈⁶⁾, 농어촌 소외계층 복

합주거시설⁷⁾, 노인복지주택⁸⁾, 노인집합주거⁹⁾, 노인주택¹⁰⁾, 노인공동생활주택¹¹⁾, 공동생활홈¹²⁾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좀 더 광의적인 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양로원(양로시설) 등도 공동주거시설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령자 공동주거시설과 관련한 여러 용어를 통하여 그 개념을 고찰해 보면, 고령자 공동주거시설은 ‘시설(Facility)’과 ‘주거(Home 또는 House)’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된다. (표1) ‘시설’은 고령자에 대한 공공, 의료, 케어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거주하는 공공 및 민간의 복지시설로서의 개념으로 파악되며, ‘주거’는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적 주거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Table 2. The Concept of Community Living Home

구분	내용
개념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건축법상의 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유사 관련용어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 노인공동생활주택

본 연구에서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거’의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련 시설에 관한 용어로는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 노인집합주거, 노인공동생활주택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 관련 용어에서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2) 농림축산식품부,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2014.

3) 박헌준외 2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11. 5. 1~8쪽

4) 오찬욱, 그룹 홈과 공유주택 개념을 중심으로 본 Aging in Place를 위한 노인주거대안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9권 3호, 2008. 59~70쪽

5) 이진혁, 일본 도시형 유료노인 홈의 건축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2권 2호, 2006. 3. 23~32쪽

6) 조원석외 1인, 독거노인용 경로 홈의 유형개발과 계획기준의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 4호, 2012. 11. 27~35쪽

7) 노래원의 1인,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를 통한 농어촌 소외계층 복합주거시설 활성화 계획,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10. 141~144쪽

8)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

9)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 12

10)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1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10), 위의 책.

12) 김승근, 재생을 통한 농어촌 마을형 공동생활 홈 조성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5권 1호(통권48호), 2013. 2. 21~28쪽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하여 ‘고령자의 공동체적 생활을 통하여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유형’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범위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공동생활홈은 거주유형에 따라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공동취사형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3)

먼저, 독립거주형은 각 구성원이 취침과 취사를 각자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유형으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에 가장 유리하지만 시설비 및 운영비가 다소 비싸지는 단점도 있다.

독립침실형은 각자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취침하되, 취사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형으로, 프라이버시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과 구성원간의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공동거주형은 취침 및 취사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으로,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우나 구성원간의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취사형은 취침을 마을 내 개인 소유의 주택에서 하고 취사만 공동으로 유지하는 유형으로, 겨울철에 마을회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Table 3. Typology of Community Living Home

유형	내용	형태
독립거주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개별적으로 영위하는 유형	
독립침실형	시설 내에서 취침은 개별적으로 하나 취사는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공동거주형	시설 내에서 취침과 취사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공동취사형	취침은 마을 내 개인 소유주택에서 하고, 취사만 공동으로 영위하는 유형	
비고	□ 개인생활공간 ■ 공동생활공간 ■ 부엌	

2.2 기존 연구동향

본 연구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 관련연구’,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 등의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Table 4. Research on Residential Realities for Rural Elderly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내용
채준섭 외 2인	2008	전북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분석연구	노인주택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주거실태 지표를 추출하고, 주거실태를 분석
김승희	2009	고령가구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도 지역의 중소도시 3개시를 대상으로 고령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만족도를 조사·분석
(사)문화도시연구소	2010	상남면 및 기린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실태 조사연구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과 기린면에 노인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저소득층 주거실태조사 및 주택수요 예측
장미선 외 2인	2011	쇠퇴지역 거주 노인의 주택개조를 위한 주거실태 조사연구	쇠퇴지역의 고령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실태를 조사·연구
김신영 외 1인	2011	강원도 파소지역의 정주실태 연구	강원도에서 파소화 정도가 심각한 농·산촌을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주거만족도를 조사·분석
박현춘 외 1인	2011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태를 고찰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주거를 지원하고 있는 충남의 시범사업을 분석
김승근	2011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연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및 백곡면을 대상으로 고령자의 주거실태를 조사·연구
김강섭 외 1인	2011	농어촌지역 공동생활시설 이용실태 고찰	농어촌 공동주거의 이용실태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

먼저,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 관련연구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주거만족도, 공동생활홈 시범사업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특정 지역이나 마을에 국한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표4)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연구는 주거복지 정책, 공동거주 선호도, 주거개선 욕구, 노인 케어 서비스 등 주거복지에 관한 비교적 다양한 범위에서 연구되고 있어,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광범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해당 서비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공간 및 시설,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의 연계협력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표5)

마지막으로 농촌 고령자 주거모델 관련연구로는 새로운 주거모델의 개발, 주거공간의 건축계획적 특성 등을 제안한 내용으로, 고령자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모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거주유형에 따른 특성파악은 미비하다.(표6)

정리하면, 농촌 독거노인 주거실태와 관련해서는 주로 저소득층 독거가구 고령자의 주거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농촌 고령자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케어시스템 및 활성화 방안 등 주로 서비스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촌 고령

자 주거모델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주거시설에 관한 공간 및 기능 등의 건축계획적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5. Research on Residential Welfare for Rural Elderly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내용
조부철	2007	농촌노인 주거복지정책에 관한연구	농촌지역 노인 주거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주거정책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
유종국	2007	재가 노인케어서비스 모델에 관한 연구	재가 노인케어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케어서비스 모델을 제시
조원석 외 1인	2011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거에 대한 선호경향을 분석
정인수 외 2인	2012	농촌지역 독거노인 생활공동체 거주만족도	전북 김제시 독거노인 생활공동체가 독거노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판단
최병숙	2013	농촌지역의 주거복지의 개념설정을 위한 연구	농촌주택의 정책을 주거복지의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주택 정책대상의 접근방식을 다루고 있음
정금호	2013	농촌 주거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 취약계층의 주택 개보수사업의 특성을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거개선 욕구를 도출하며, 농촌주택 개선방향 모색

Table 6. Research on Residential Model for Rural Elderly

연구자	년도	연구제목	연구내용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2007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 디자인 주택 매뉴얼 개발	농어촌 주택의 실내 및 실외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 및 형태 디자인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
박미지	2007	클러스터 구성방식을 통한 그룹형 노인주거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	'시설'로부터 '주거'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시설로서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클러스터 배치로 노인주거시설을 제시
박준영 외 2인	2007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고령자의 자립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 및 공급방안 제시
이은령 외 1인	2008	노인주거 복합시설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주거시설과 자립형 복지시설의 복합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이와 관련된 교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방안 모색
한승엽	2008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 지역 이용시설에 관한 연구	시설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 복지시설의 거점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시
조원석 외 1인	2012	농어촌 독거노인의 공동주거에 관한 건축계획적 특성연구	농어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공동주거 생활양식 및 선호경향을 분석하여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건축계획적 특성을 도출

3. 공동생활홈의 지역별 현황분석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2013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생활홈의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한 행정자료를 의뢰하여 총 684개소의 내용을 취합¹³⁾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공동생활홈에 대해 지역별·거주유형별·운영주체 및 운영방식별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3.1 지역별 분포현황

먼저, 광역자치단체별 공동생활홈의 시설개소를 살펴보면, 전국 총 684개소 중 전북지역에 463개소(67.7%)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 경남 79개소(11.5%), 전남 77개소(11.3%), 충북 22개소(3.2%), 충남 22개소(3.2%), 경북 11개소(1.6%), 강원 7개소(1.0%), 경기 3개소(0.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7)

공동생활홈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진안군 209개소, 김제시 127개소, 완주군 126개소로, 총 462개소로 나타나 3개 기초자치단체에 거의 모든 공동생활홈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안군에 가장 많은 시설이 분포하는 이유로는 동절기 3개월(12월~2월) 동안 일시적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회관 등을 공동생활가정(1개소 5인 이내로 제한)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공동생활홈이 설치되어 있는 총 47개 기초자치단체의 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18개소, 충남 8개소, 경남 6개소, 경북 및 전북 4개소, 경기 3개소, 강원 및 충북 2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지역의 각 시·군에서 공동생활홈의 건립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Local Distribution

광역	기초	개수
경기(3)	여주군	1
	연천군	1
	이천시	1
소계		3
강원(2)	인제군	1
	영동군	6
	소계	7
충북(2)	괴산군	2
	영동군	20
소계		22
충남(8)	공주시	3
	금산군	5
	서산시	3
	서천군	2
	아산시	1
청양군	5	
천안시	2	
예산군	1	
소계		22
경북(4)	의성군	2
	청도군	4
	예천군	5
	소계	11
경남(6)	통영시	1
	의령군	50
	창녕군	3
	산청군	2
	거창군	10
	하동군	13
소계		79
전북(4)	익산시	1
	김제시	127
	진안군	209
	완주군	126
소계		463
전남(18)	진안군	3
	순천시	18
	고흥군	10
	해남군	10
	여수시	3
	나주시	2
	담양군	1
	곡성군	1
	보성군	2
	장흥군	1
	강진군	1
	함평군	2
	영광군	6
	진도군	4
광양시	2	
화순군	1	
영암군	9	
완도군	1	
소계		77
계(47개소)		684

13) 취합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1월에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의 책자(발간번호: 지역개발과-3794(2013.9.25)호)로 발간하였다.

3.2 거주유형별 현황

진술한바 와 같이, 공동 생활홈을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공동취사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8과 같다.

총 684개소 중 거주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이 표기된 540개소를 대상으로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공동거주형 522개소(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독립침실형이 11개소(2.0%), 독립거주형이 4개소(0.7%), 공동취사형이 2개소(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거주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난방시설의 교체 및 보수, 각 실의 도배 및 장판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통하여 매우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공동생활홈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물리적인 공동거주공간을 구축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공동시설로서의 운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김제시와 진안군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존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 등의 마을 공동시설 용도로서 사용하기 애매해지는 점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전남 영암군에서 독립침실형이 9개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영암군의 공동생활홈은 한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로 구성된 형태로서, 총 34개동(34가구)에 1가구 당 면적을 44㎡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거주공간으로서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Table 8. Local Distribution of Residence Types

유형	광역시	기초	개수
독립거주형	충남	태안군	1
	전남	신안군	3
	소계		4
독립침실형	전남	영암군	9
		완도군	1
	전북	익산시	1
	소계		11
공동거주형	경기	연천군	1
	강원	홍천군	6
	충북	영동군	20
	충남	공주시	3
		금산군	5
		서산시	3
		서천군	2
		아산시	1
	경북	청양군	5
		의성군	2
		청도군	4
	경남	예천군	5
		통영시	1
	경남	의령군	50
		창녕군	3
		산청군	2
		거창군	10
	전북	김제시	127
		진안군	209
	전남	순천시	18
		고흥군	10
		해남군	10
		목포시	1
		여수시	3
		나주시	2
		담양군	1
		곡성군	1
보성군		2	
장흥군		1	
강진군		1	
함평군		2	
영광군		6	
진도군		4	
소계		522	
공동취사형	전남	광양시	2
	소계		2
기제사항없음	경기	이천시	1
		여주군	1
	강원	인제시	1
	충남	예산군	1
	경남	하동군	13
	전북	완주군	126
	전남	화순군	1
소계		144	
계(47개소)		684	

3.3 운영주체 및 운영비 조달 현황

공동생활홈의 운영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는 지자체, 마을회, 거주자, 공동14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운영비 조달은 조달주체에 초점을 두어 지자체, 마을회, 공동(지자체+마을회)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표9 및 표10과 같다.

먼저, 운영주체 현황을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한 총 613개소 중에서 마을회가 운영주체인 곳이 564개소(92.0%)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거주자 29개소(4.7%), 그리고 지자체 및 공동은 각 10개소(1.6%)로 매우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전남의 경우에는 마을회 35개소, 거주자 28개소, 지자체 10개소로 매우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는 18개 시·군별로 행재정적 여건에 맞게 공동생활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9. Situation of Administrators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10	10
마을회	2	7	22	22	7	6	463	35	564
거주자	1							28	29
공동						10			10
기제사항없음					(4)	(63)		(4)	(71)
합계	3	7	22	22	11	79	463	77	684

다음으로, 운영비 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없는 곳을 제외한 총 661개소 중에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조달하고 곳이 637개소(9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공동 21개소(3.2%), 그리고 마을회는 매우 적은 3개소(0.5%)로 나타났다.

Table 10. Situation of Budget Procurement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합계
지자체	1		20	20	9	66	462	59	637
마을회	2	1							3
공동		6	2		2		1	10	21
기제사항없음				(2)		(13)		(8)	(23)
합계	3	7	22	22	11	79	463	77	684

이상을 종합해 보면, 현재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시설관리 및 입주자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 및 조달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원적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운영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 거주유형별 운영실태

본 장에서는 공동생활홈에 대한 유형으로서 독립거주

14) 운영주체의 '공동'의 유형으로는, '지자체+마을회', '지자체+거주자', '마을회+거주자'의 세 가지로 파악되나, 10사례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본 연구의 분석 방향과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략하였다.

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등의 세 가지¹⁵⁾ 대표적 모범 사례¹⁶⁾에 대해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공동생활홈의 조성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4.1 독립거주형-송면리 공동생활홈

송면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조성되었다. 구 송면리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였으며, 현재 남자 1인 및 여자 2인의 독거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괴산군에서 연간 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240천원/년이다. 또한, 입주자격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여 연간 약 720천원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장변을 크게 3분할하여 각각의 개별 주거공간으로 구획하고, 각 개별 거주 공간 내에 주방과 화장실(욕실 포함)을 설치하였다. 개별 거주 공간의 폭원은 기존 마을회관의 구조벽체에 맞추어 구획하였고, 건축물의 전면과 후면에 각각 폭원 약 2,700mm와 1,200mm의 목재 데크가 설치되었다.

기존 1층 규모의 송면리 노인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활용하였고, 공동생활홈의 전체면적은 107.7㎡로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33.9㎡/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독립침실형-갈산리 공동생활홈

갈산리 공동생활홈은 (재)다솜동지복지재단의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조성되었는데,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활용하여 조성한 사례로, 1층의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리모델링하고, 2층은 기존 용도인 경로당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가 스스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익산시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연간 운영비로 난방연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없다. 또한, 각 입주자의 생활비 등은 거주자가 스스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면구성은 방 3개소에 남자 3인이 각각 생활을 영위하며, 거실 및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생활홈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전체면적(62.6㎡)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20.9㎡/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3개 방의 면적은 총 29.2㎡로, 각 실의 취침공간은 1인당 약 9.7㎡/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건축계획적 측면에서 매우 비좁은 규모로 파악되며, 더욱이 각 실에 붙박이장(깊이: 800mm)이 설치되어 더욱 협소한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한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실 및 주방은 각각 14.2㎡(4.7㎡/인)과 7㎡(2.3㎡/인)를 점하고 있어 총 21.2㎡(7㎡/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실은 좁고 긴 평면 형태로 구성되어 공간 활용적 측면에서 다수가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기타 창고 및 화장실 등의 총 면적은 12.2㎡로 1인당 4.1㎡/인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장실(욕실 포함)의 경우에는 1개소를 3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용빈도를 고려할 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3 공동거주형-월성여자경로당

월성여자경로당은 김제시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2009년에 주민합의를 통하여 기존의 월성 2리 마을회관을 여성 전용의 공동생활 홈으로 개보수하여 활용한 사례로써, 현재 여성 고령자 16인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월성2리 마을회가 담당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김제시에서 연간 경로당 지원비 3,500천원 및 공동생활홈 운영지원비 3,000천원의 총 6,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비는 공동생활홈 거주자의 친인척과 마을부녀회에서 충당하여 연간 약 6,500~10,000천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침공간으로써 방 1개소 및 거실로 나누어 16인이 공동으로 취침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면적(96㎡)에 대하여 1인당 점유면적을 살펴보면, 6.0㎡/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제 취침공간으로 이용되는 방과 거실의 실 면적을 합산하면 44.9㎡에 이르고 있는데, 취침공간은 1인당 약 2.81㎡/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방의 경우 또한 실 면적이 14.3㎡로 1인당 0.89㎡/인을 점하고 있어 16인분의 식사를 한끼만에 준비하기에 공간이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창고, 외부 화장실, 계단 등의 총 면적은 26.5㎡로 1인당 1.65㎡/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화장실의 경우에는 내부 및 외부 각 1개소의 총 2개소가 있으나, 실제로 겨울철에는 내부 화장실만 이용되고 있어, 16인이 공동으로 1개소의 욕실 및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5)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거주’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유형으로서 공동취사형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16) 총 684개의 사례에서 1차적으로 사업주체, 사업비 조달, 건축방식, 운영주체, 운영비 조달, 지원근거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모범사례로 인식되는 독립거주형 3개소(괴산 3개소), 독립침실형 3개소(익산, 완도, 청양), 공동거주형(김제, 의령, 예천) 3개소의 총 9개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현재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일정한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활발히 운영·유지되고 있는 모범 사례, 기존 공공시설 또는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한 사례, 고령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무장애디자인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었거나, 환경보호 및 시설 유지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각 유형별 1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1. Administration Actual Situation and Building Situation according to the Residence Types

구분	항 목	송면리 공동생활홈			갈산리 공동생활홈			월성 여자경로당		
일반 사항	주 소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127-5			전북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164-5			전북 김제시 월성동 230-1		
	거주인원	3인(남성 1인, 여성 2인)			3인(남성)			16인(여성)		
	거주유형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		
	건축방식	리모델링(마을회관)			리모델링(마을회관)			기존 마을회관 개보수		
운영 태	사업주체	괴산군+(재)다솜등지복지재단			익산시+(재)다솜등지복지재단			월성2리 마을회		
	운영주체	송면리 마을회			익산시+거주자			월성2리 마을회		
	연간 운영비	(군지원) 매통(보조난방)지원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약 720천원/년			(시지원) 냉난방비 일부 지원 (거주자) 자체 생활비 부담			익산시+거주자 (경로당운영지원) 3,500천원/년 (공동생활홈지원) 3,000천원/년 (부녀회 및 기타) +a 총 6,500~10,000천원/년		
	입주자부담	240천원/년(20천원/월)			임대료 없음			임대료 없음		
건축 개요	입주자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법적용도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대지면적	424.0㎡			606.0㎡			448.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건물규모	지상 1층			지상 2층(공동생활홈은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101.7㎡			62.6㎡			96.0㎡		
	건폐율	24%(법정 40%)			15.6%(법정 40%)			21.4%(법정 40%)		
	연면적	96.9㎡			137.8㎡			92.0㎡		
실별 면적	용적율	22.9%(법정 100%)			22.5%(법정 100%)			20.5%(법정 100%)		
	실 명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실 면적(㎡)	1인당 면적(㎡)	개 소
	방	69.7	23.2	3	29.2	9.7	3	26.0	1.63	1
	거실	-	-	-	14.2	4.7	1	18.9	1.18	1
	주방	-	-	-	7	2.3	1	14.3	0.89	1
	화장실	10.3	3.4	3	3.4	1.2	1	10.3	0.64	2
	기타	21.7	7.3	3	8.8	2.9	-	26.5	1.65	
계	101.7	33.9		62.6	20.9		96.0	6.0		
평면도										

주로 침실로 이용되고 있는 방에는 평소에 약 10~12 명이 공동으로 취침을 하고 있고, 나머지 4~6명은 거실에서 취침을 하고 있다. 각각의 취침자리는 개인별로 암 목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이 연령순서로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방에는 주방용품, 식료품 등을 위한 수납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바닥 한쪽에 각종 물건들을 쌓아두고 있으며, 한 쪽 벽면에 개인수납장만 설치되었다. 화장실은 샤워장과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치하였으며, 샤워장과 화장실 사이에는 문틀에 의한 단차가 형성되어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에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월성여자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촌 독거노인의 공동체적 생활환경을 도모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바는 매우 크지만, 좀 더 미시적으로 공동생활의 양상에 초점을 두고 고찰해 보면, 16인의 공동생활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점, 취침공간이 협소하여 잠자리가 불편한 점, 화장실이 1개소로 다수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점, 주방에 식료품 및 주방용품 등의 수납공간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4.4 거주유형별 종합검토

진술한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의 각 대표 유형에 대하여 거주자의 주생활 수준 및 운영실태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생활 수준

주거시설의 1인당 거주면적은 적어도 10㎡/인은 되어야 하며, 표준으로는 16.5㎡/인이 요구되고 있다¹⁷⁾. 일본의 경우에는 1인당 최저 소요면적¹⁸⁾을 9~10.5㎡/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현대적 생활공간의 표준적 지표로서 송바르 드 로우 기준¹⁹⁾에 의거 주생활 수준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표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유형별 대표사례에 대하여 1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수준을 검토해 보면, 독립거주형은 33.9㎡/인, 독립침실형은 20.9㎡/인, 공동거주형은 6.0㎡/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침실형과 독립거주형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세계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최소 거주면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동거주형인 월성여자경로당의 경우에는 6㎡/인으로 송바르 드 로우의 병리기준(8㎡이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오래 거주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운영실태

또한, 운영비를 중심으로 한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독립거주형의 경우에는 1인당 240천원/년(임대료 2만원/월)이 소요되고 있고, 독립침실형은 1인당 167천원/년, 공동거주형은 1인당 406천원/년으로 나타났다.(표12)

Table 12. Administration Actual Situation of Community Living Home

명칭	거주인원(인)	운영비(천원/년)				1인당 운영비(천원/년)	비고
		지자체	마을회	거주자	계		
송면리 공동생활홈	3	500	0	720	1,220	240	임대료 월 2만
갈산리 공동생활홈	3	500	0	0	500	167	임대료 없음
월성 여자경로당	16	6,500	0	0	6,500	406	임대료 없음

*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운영비 산출을 위하여 부정기적인 지원금(a)은 배제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별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정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독립거주형 및 독립침실형의 경우에는 마을회가 주체가 되어 거주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징수하여 운영·유지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공동거주형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사업의 추진에 의해 이루어진 형태가 많아,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17) 이광로 외 4인, 건축계획, 문운당, 1988, 26쪽

18) 일본에서 타다미 공간은 900×1,800mm를 1조(疊)를 기준으로 하며, 3.0~3.5조/인을 최저 소요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건축면적의 평균인 55% 정도로 하여 계산하면, 9~10.5㎡/인이 된다.

19) 주택 건축면적의 유효기준을 1인당 16㎡이상이면 개인적 혹은 가족적인 융통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계기준은 1인당 14㎡이하로 거주 용통성 보장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리기준은 1인당 8㎡이하로 거주자의 신체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공동이용시설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총 684개소의 공동생활홈을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한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분석·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생활홈의 67.7%는 전북지역의 진안군, 김제시, 완주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전남지역에서는 총 18개 시군에 공동생활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공동생활홈의 건립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정책을 가장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공동생활홈의 유형은 크게 독립거주형, 독립침실형, 공동거주형으로 구분되며, 공동거주형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기존 마을회관 등을 개보수하여 매우 적은 예산으로 공동생활홈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나, 운영은 마을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넷째, 대표사례로서 송면리 공동생활홈(독립거주형), 갈산리 공동생활홈(독립침실형), 월성 여자경로당(공동거주형)의 각 대표유형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평가해 본 결과, 송면리와 갈산리의 공동생활홈은 대체로 유효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월성리의 경우에는 병리기준인 8㎡/인에도 못 미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섯째, 공동생활홈의 운영주체는 기본적으로 해당 마을회 스스로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생활홈은 향후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원할 수 있으며, 거주자로 하여금 자생적인 공동생활이 아닌 지원금에 대한 혜택으로 오인되기 쉽기 때문이다.

여섯째, 공동생활홈 유형 중에서 독립거주형 및 독립침실형은 공동거주형에 비하여 설치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통한 심리적 안정성 도모, 쾌적한 거주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담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동생활홈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지원대책, 배리어 프리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각종 지자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개발 연구, 2010
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고령자 지원시설 현황, 2014
3. 박현준외 2인,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주거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11, 1~8쪽
4. 김승근, 농어촌마을형 공동생활홈 사업의 발전과제, 다솜동지복지재단, 2012

접수일자 : 2014. 7. 10

심사완료일자 : 2014.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4. 11. 23